

붙임1 대한민국 스포츠영웅 선정규정 신규대조표

현행	개정(안)
<p>제4조(스포츠영웅 후보 자격)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가진 사람을 스포츠영웅으로 선정한다. <개정 2022. 1. 24., 개정 2023. 9. 11.> 1~3. “생략” 4. 선수는 공식 은퇴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제6조제3항의 후보자 추천서 제출 마감일 기준 20년이 경과한 인사, 스포츠 공헌자는 제6조제3항의 후보자 추천서 제출 마감일 기준 20년 이상 스포츠계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인사로 한다. 다만, 만 60세 이전에 사망한 인사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 1. 24., 2023. 9. 11.></p>	<p>제4조(스포츠영웅 후보 자격)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가진 사람을 스포츠영웅으로 선정한다. <개정 2022. 1. 24., 개정 2023. 9. 11.> 1~3. “<u>현행과 같음</u>” 4. 선수는 <u>전문 선수로서 마지막으로 등록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u> 제6조제3항의 후보자 추천서 제출 마감일 기준 20년이 경과한 인사, 스포츠 공헌자는 제6조제3항의 후보자 추천서 제출 마감일 기준 20년 이상 스포츠계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인사로 한다. 다만, 만 60세 이전에 사망한 인사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 1. 24., 2023. 9. 11., <u>2026. 00. 00.</u>></p>
<p>제5조(스포츠영웅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스포츠영웅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2. 1. 24.> 1~6. “생략” <신 설></p>	<p>제5조(스포츠영웅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스포츠영웅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2. 1. 24., <u>2026. 00. 00.</u>> 1~6. “<u>현행과 같음</u>” ② <u>체육회는 최종후보자로부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u> <신설 <u>2026. 00. 00.</u>></p>
<p>제6조(스포츠영웅 후보자 추천권자) ① 체육회는 해당 연도 스포츠영웅 선정계획을 상반기 중 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립한 후 다음 각 호의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 24.></p> <p>1. 추천위원: <u>체육회 각종 위원회 위원장, 선수위원회 위원 등 범 스포츠계 및 비스포츠계 인사로 구성된 30명 내외</u> <개정 2022. 1. 24.></p> <p>2. 체육단체: <u>회원단체, 프로 경기단체, 체육유관단체 및 체육학계</u> <개정 2022. 1. 24., 2023. 9. 11.></p> <p>3. 출입기자: <u>체육회 출입 언론기관이 등록된 대표 기자</u> <개정 2022. 1. 24.></p> <p>4. 삭제 <2023. 9. 11.></p>	<p>제6조(스포츠영웅 후보자 추천권자) ① 체육회는 해당 연도 스포츠영웅 선정계획을 상반기 중 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립한 후 다음 각 호의 <u>후보자</u>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 24., <u>2026. 00. 00.</u>></p> <p>1. 추천위원 <u>가. 대한체육회 이사 <신설 2026. 00. 00.></u> <u>나. 체육회 각종 위원회 위원장 및 선수위원회 위원 <신설 2026. 00. 00.></u> <u>다. 체육회 출입 언론기관이 등록된 대표 기자 <신설 2026. 00. 00.></u></p> <p>2. 추천단체 <u>가. 국민체육진흥법상 제2조 제9항 가, 나, 다목에 해당되는 단체 <신설 2026. 00. 00.></u></p> <p>3. 출입기자: <u>체육회 출입 언론기관이 등록된 대표 기자</u> <개정 2022. 1. 24.></p> <p>4. 삭제 <2023. 9. 11.></p>

현행	개정(안)
<p>5. 대한체육회 이사회 <신설 2023. 9. 11.></p> <p>② 제1항의 추천위원, 체육단체 등은 선정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 1. 24., 2023. 9. 11.></p> <p>③ 제1항의 각 추천권자는 1명 이상의 후보자에 대한 추천서를 작성하여 대한체육회장(이하 “체육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4., 2023. 9. 11.></p> <p>④ 체육회는 후보자를 추천한 추천권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⑤ 위원회는 추천권자로부터 추천된 사람에 대하여 제4조의 후보 자격 및 제5조의 결격사유를 검토하고, 스포츠영웅 후보자 명부(Pool)에 매년 추가하여 등록한다.<신설 2023. 9. 11.></p>	<p>5. 대한체육회 이사회 <신설 2023. 9. 11.></p> <p>② 제1항의 추천위원 및 추천단체의 구체적인 명단은 선정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4., 2023. 9. 11., <u>2026. 00. 00.</u>></p> <p>③ 제1항의 각 추천권자는 1명 이상의 후보자에 대한 추천서를 작성하여 대한체육회장(이하 “체육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4., 2023. 9. 11.></p> <p>④ 체육회는 후보자를 추천한 추천권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⑤ 선정위원회는 추천권자로부터 추천된 사람에 대하여 제4조의 후보 자격을 및 제5조의 결격사유를 검토하고, 스포츠영웅 후보자 명부(Pool)에 매년 추가하여 등록한다.<신설 2023. 9. 11., <u>2026. 00. 00.</u>></p>
<p>제7조(최종후보자 추천)</p> <p>① 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최종후보자 추천권자에게 추천자, 추천 사유가 포함된 제6조제5항의 후보자 명부를 제공한다. <개정 2022. 6. 16., 2023. 9. 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체육인단: 해당 연도 대한체육회체육상 체육대상 및 최우수상 수상자 2. 추천기자단: 체육회 출입 언론기관의 기자 중 다년간 스포츠 업무 담당 경력을 지닌 자로 한국체육기자연맹 및 한국체육언론인회로부터 추천받은 8명 이내 <p>3. 대한체육회 원로회의기구 <신설 2023. 9. 11.></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② 체육인단, 추천기자단 및 대한체육회 원로회의기구 개개인은 제6조제5항의 후보자 명부의 후보자 중 각각 최대 5명씩 최종후보자를 추천한다. <개정 2022. 1. 24., 2023. 9. 11.></p> <p>③ 체육회는 체육인단, 추천기자단 및 대한체육회 원로회의기구 개개인이 추천한 후보자 중 다수가 추천한 순으로 선정인원의 3배수를 선정위원회에서 결격사유 확인을 거쳐 최종후보자로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3배수와 다르게 최종후보자</p>	<p>제7조(최종후보자 추천)</p> <p>① 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최종후보자 추천권자에게 추천자, 추천 사유가 포함된 제6조제5항의 후보자 명부를 제공한다. <개정 2022. 6. 16., 2023. 9. 11., <u>2026. 00. 00.</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체육인단: 해당 연도 대한체육회체육상 체육대상 및 최우수상 수상자 2. 추천기자단: 체육회 출입 언론기관의 기자 중 다년간 스포츠 업무 담당 경력을 지닌 자로 한국체육기자연맹 및 한국체육언론인회로부터 추천받은 8명 이내 <p>3. 대한체육회 원로회의기구 <신설 2023. 9. 11.> <u><삭제 2026. 00. 00.></u></p> <p>4. 한국체육학회 추천단: 한국체육학회의 체육사, 스포츠사회학, 체육정책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한국체육학회장이 추천한 5명 이내</p> <p><u><신설 2026. 00. 00.></u></p> <p>② 체육인단, 추천기자단 및 한국체육학회 추천단 개개인은 제6조제5항의 후보자 명부의 후보자 중 각각 최대 5명씩 최종후보자를 추천한다. <개정 2022. 1. 24., 2023. 9. 11., <u>2026. 00. 00.</u>></p> <p>③ 체육회는 체육인단, 추천기자단 및 한국체육학회 추천단 개개인이 추천한 후보자 중 다수가 추천한 순으로 선정인원의 3배수를 선정위원회에서 결격사유 확인을 거쳐 최종후보자로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3배수와 다르게 최종후보자를 결</p>

현행	개정(안)
<p>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4., 2022. 6. 16., 2023. 9. 11.> 1~2 “생략”</p>	<p>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4., 2022. 6. 16., 2023. 9. 11., <u>2026. 00. 00.</u>> 1~2 “현행과 같음”</p>
<p>제9조(최종후보자 평가) ① 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최종후보자 평가권자에게 추천 사유가 포함된 최종후보자 명단을 제공한다. <개정 2022. 6. 16.> 1. 선정위원회 위원 2. 평가기자단: 체육회 출입 언론기관의 기자 중 다년간 스포츠 업무 담당 경력을 지닌 자로 한국체육기자연맹 및 한국체육언론인회로부터 추천받은 10명 내외</p> <p>②~⑤ “생략”</p>	<p>제9조(최종후보자 평가) ① 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최종후보자 평가권자에게 추천 사유가 포함된 최종후보자 명단을 제공한다. <개정 2022. 6. 16.> 1. 선정위원회 위원 2. 평가기자단: 체육회 출입 언론기관의 기자 중 다년간 스포츠 업무 담당 경력을 지닌 자로 한국체육기자연맹 및 한국체육언론인회로부터 추천받은 10명 내외 <u>로 구성하되, 제7조제1항제2호의 추천기자단과 동일인이 아니어야 한다.</u></p> <p>②~⑤ “현행과 같음”</p>